

-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•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•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
-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•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·예술도시 •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



연수구보

■ 구정 방향 ■

함께 가꿔요!

행복한 연수!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(우)406-120 ☎ 810-7072 / FAX 810-713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부록 제676호 2012. 2. 20.(월)

【고 시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-20호(도로명주소 고시) 1
-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-21호(도로명주소 고시) 3

【공 고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-138호(인천광역시연수구위생업소행정처분경감기준에관한규칙 폐지(안) 입법예고) 5

회							
람							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. 02. 20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외 2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		별 도 열 략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(☎810-7986~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02. 20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2013. 12. 31.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조서

NO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-13	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	미부여	2009-05-14	중앙공원(센트럴카프)로 향하는 도로	송도국제업무단지 C8-2블록 업무복 합시설
2	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산102-1	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487-14	미부여	2009-07-10	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의 아들인 비류가 남하 해서 세운 나라에서 유래	
3	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산94-6	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 255-10	미부여	2009-12-09	주도로 함박로와의 연관성으로 안길을 붙여 도로명 부여	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. 02. 20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52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변경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별 도 열 략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(☎810-7986~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02. 20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2013. 12. 31.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조서

NO	종전주소	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변경사유	도로명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
	변경전	변경후				
1	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325-4, 944	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327-2, 944	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52	지번오류로 인한 지번변경	2009-07-09	봉재산을 남북으로 휘감고지나는 도로여서 지형적인 특성을 반영한 도로명

인천광역시연수구위생업소행정처분경감기준에관한규칙 폐지(안) 입법예고

인천광역시연수구위생업소행정처분경감기준에관한규칙을 폐지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2년 2월 10일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1. 폐지이유

-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시 감경기준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(행정처분의 기준) [별표23] I. 일반기준 15호에, 공중위생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(행정처분기준) [별표7] I. 일반기준 4호에 이미 규정된 사항을 재차 언급한 것에 불가함
- 본 규칙 제3조(경감 적용기준)중 “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경감처분하며,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의 경우는 영업정지3월로 경감처분”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의 경감기준의 최대 경감폭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준이 필요없음

2. 주요내용

- 「인천광역시연수구위생업소행정처분경감기준에관한규칙」을 폐지

3. 의견제출

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1. 11.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【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길 33(☎ 032-810-7351, www.yeonsu.go.kr/ 참조:위생관리과장)】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, 법인명, 대표자의 성명) 및 전화번호

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호

인천광역시연수구 위생업소행정처분경감기준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

인천광역시연수구 위생업소행정처분경감기준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